

수원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89728 판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진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13.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905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 제1심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은 원고 아닌 C이다. 원고는 C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및 C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계약의 명의상 매수인이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이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는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계약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2020. 12. 3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 외에 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 1) 갑 제1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9. 6. 5.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② C, F, G이 2019.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6.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2, 3호증[C 작성 확인서로서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의 작성일자(‘2019. 6. 7.’ 내지 ‘2019. 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진실하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C은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체결과 해지 과정에서 자신이 원 · 피고를 중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을 제2, 3호증은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와는 다르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매수인이 C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강경묵, 판사 김태형